

2026년 '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' 창업기업 모집 공고

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」 참여할 (예비)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3월 13일
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

1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(예비)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
- 지원내용: 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

사업비 및 창업공간 지원	특화프로그램	육성프로그램
(최대 5천만원~최소 1천2백만원) 시제품(서비스)제작, 시장검증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	(입학식)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, 마스터즈 강연 (인사이트 네트워크 런치) 선도기업 네트워킹 (임팩트 쇼케이스) 기업 성과 공유	(월 1~2회 이상)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담임·전문멘토링 (교육·워크숍 등, 총 20시간)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

- 협약기간: 협약일~2026년 12월까지

2

신청자격 및 선정규모

□ 신청자격: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

□ 선정규모: 총 40개사(예비창업자 10개팀 내외 + 창업기업 30개사 내외)

구분		지원대상 요건 설명
예비창업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창업기업	공통	①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 ②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(2019. 3. 14.~2026. 3. 13.) ③ 경기도 소재 기업(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) ※ ①, ②, ③ 모두 충족 필요
	사회적 경제 조직	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 3항 가~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
	선택 사회적 경제 조직 진입희망 (非사회적 경제조직)	①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로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 및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하려는 자 ②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 및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하려는 자 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 ※ 조건 '①+③' 또는 '②+③' 충족 필요 ☞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

※ (참고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**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**

-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
-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

□ 신청 제외 대상

< 신청 제외 대상 내용 >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자
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- 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 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 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- ▶ 지원제외 대상 업종(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)
 1. 일반유흥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: 56211)
 2. 무도유흥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: 56212)
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91249)
 4.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

- ▶ 중복참여 불가 사업
 1. (2023년) 임팩트 테마별 액셀러레이팅 사업, R&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(사업개발비 지원기업)
 2. (2024년)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,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, R&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(사업개발비 지원기업)
 3. (2025년)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,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

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에 당해연도 참여하는 자

- ▶ 2026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.
- ▶ 단, 아래 사업에 한해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. ※ 1~4번 내용 외 타 사업은 중복참여 불가
 1. 사회환경 문제해결 사업 중 개방형 혁신 사업
 2. 판로지원사업(제품 경쟁력 강화, 협약매장 연계판촉 지원)
 3.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사업
 4. 기타
 - (1) 타 사업 내 ‘컨소시엄’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가능
 - (2) 교육·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(자금)이 아닌 간접 지원만 제공받는 경우 참여 가능

⑥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」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중 ‘동 사업 접수마감일’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(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·수행 불가)

- ▶ 창업사업화 지원사업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48호 「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‘사업화’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(시제품 제작비 등)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- ▶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(기업)
 - ※ 지자체 지원사업은 동일아이템·동일비목 사용이 아닐 경우

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정한 은행(우리은행)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⑨ 2026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(예: 사회적물의 발생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*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

□ 지원내용: 사업비 및 담임·전문 멘토링, 특화프로그램, 역량강화프로그램 등

구분	세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창업기업 사업비	<p>■ 시제품(서비스) 제작, 사업모델 수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(공급가액 기준) (최대 5천만원~최소 1천 2백만원, 평균 2천만원 내외)</p> <p>< 사업화자금 차등배정(안), 단위 : 원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최초 배정</th> <th>중간 배정</th> <th>총합</th> <th>배정기업 수</th> <th>소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등급</td> <td>30,000,000</td> <td>20,000,000</td> <td>50,000,000</td> <td>1</td> <td>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A등급</td> <td>25,000,000</td> <td>15,000,000</td> <td>40,000,000</td> <td>5</td> <td>20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B등급</td> <td>19,000,000</td> <td>12,250,000</td> <td>31,250,000</td> <td>8</td> <td>2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C등급</td> <td>13,000,000</td> <td>8,000,000</td> <td>21,000,000</td> <td>10</td> <td>21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D등급</td> <td>7,000,000</td> <td>5,000,000</td> <td>12,000,000</td> <td>16</td> <td>192,000,000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94,000,000</td> <td>60,250,000</td> <td>154,250,000</td> <td>40</td> <td>902,0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배정방식 : ① 사업계획서 내 신청금액 범위(최대 3천만원~최소 7백만원) 내에서 대면심사 결과에 따라 1차 사업비 차등 배정 → ② 중간평가('26.7월)를 통해 2차 사업비 차등 배정</p> <p>< 비목·세목 정의 및 기준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비목</th> <th>세목</th> <th>정의</th> <th>집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사업 모델 개발비</td> <td>사업 추진비</td> <td>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자재 구입비</td> <td>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</td> <td>총 사업비의 40% 이내</td> </tr> <tr> <td>기자재 임차료</td> <td>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 요한 경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외주 용역비</td> <td>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운영 비</td> <td>홍보 및 마케팅비</td> <td>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 운영비</td> <td>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여비</td> <td>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활동비</td> <td>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</td> <td>월 30만원 한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지급방식 : 회계처리기준에 기준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및 운영기관에서 지급주기에 맞춰 집행예정 (①창업기업 금액 사전신청 → ②적성성 여부 검토 후 승인 → 교부, 건별 승인 후 지급)</p>	구분	최초 배정	중간 배정	총합	배정기업 수	소계	S등급	30,000,000	20,000,000	50,000,000	1	50,000,000	A등급	25,000,000	15,000,000	40,000,000	5	200,000,000	B등급	19,000,000	12,250,000	31,250,000	8	250,000,000	C등급	13,000,000	8,000,000	21,000,000	10	210,000,000	D등급	7,000,000	5,000,000	12,000,000	16	192,000,000	합계	94,000,000	60,250,000	154,250,000	40	902,000,000	비목	세목	정의	집행기준	사업 모델 개발비	사업 추진비	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		재료비	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		기자재 구입비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	총 사업비의 40% 이내	기자재 임차료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 요한 경비		외주 용역비	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		운영 비	홍보 및 마케팅비	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		일반 운영비	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		여비	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			활동비	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	월 30만원 한도
	구분	최초 배정	중간 배정	총합	배정기업 수	소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S등급	30,000,000	20,000,000	50,000,000	1	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A등급	25,000,000	15,000,000	40,000,000	5	20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등급	19,000,000	12,250,000	31,250,000	8	2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등급	13,000,000	8,000,000	21,000,000	10	21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D등급	7,000,000	5,000,000	12,000,000	16	19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계	94,000,000	60,250,000	154,250,000	40	90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목	세목	정의	집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업 모델 개발비	사업 추진비	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료비		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자재 구입비	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	총 사업비의 4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자재 임차료	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 요한 경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주 용역비		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 비	홍보 및 마케팅비	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반 운영비	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여비	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활동비	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	월 30만원 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화 프로그램	<p>■ 네트워킹 및 협업기회 제공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</p> <p>* (세부프로그램) 입학식, 임팩트 쇼케이스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역량강화 프로그램	<p>■ 운영기관별 특징점이 반영된 교육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(20시간 참여 필수)</p> <p>* (세부프로그램) 비즈니스모델 분석 및 혁신 워크샵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원연계	<p>■ 선·후배기업-창업기획자(AC)-투자기관(VC) 등과의 미팅기회 제공</p> <p>* (프로그램명) 인사이트 네트워크 런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담임 멘토링	<p>■ 기업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사업모델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담임멘토링 제공</p> <p>* (제공횟수) 협약기간 내 월 1~2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 멘토링	<p>■ 분야별(인사·노무·특허 등) 전문멘토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</p> <p>* (제공횟수) 협약기간 내 3회 내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간제공	<p>■ 권역별(경기 북부·남부) 창업전용 공간 제공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: **2026. 3. 13.(금) ~ 4. 8.(수) 16시까지**

□ 신청방법: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(www.gsic.or.kr) 온라인 신청·접수

* 온라인 신청 방법: '별첨 3. 자주 묻는 질문' 참고

□ 제출서류 ※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. 단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서류상 유효기간 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.

연번	서류명	예비창업자	창업기업	비고	제출방법
1	참여요건 자가진단표	필수 제출			1. 사업신청서 Tab 업로드
2	사업신청서 및 계획서	필수 제출		날인 필수	
3	가점 증빙서류	해당시 제출		공고문 6p 참고	
4	가점 내역 자가체크표	해당시 제출			
5	창업기업 사업 신청 요약서	필수 제출			2. 동의서 Tab 업로드
6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필수 제출		대표자, 신청자 모두 제출	
7	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(공고일 이후 발급 건)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	필수 제출		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폐업한 사업자명 및 폐업일자 명시	3. 필수증빙 Tab 업로드
8	사업자등록증	X	필수 제출		
9	법인등기부등본	X	법인만 제출		
10	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류	X	해당시 제출		
11	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	해당시 제출			
12	2023년~20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	X	필수 제출	개인사업자: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	
13	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	X	필수 제출	고용내역 없어도 필수 제출	
14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X	필수 제출	유효기간 내	
15	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	해당시 제출			4. 기타증빙 Tab 업로드
16	기타 증빙서류	해당시 제출			

* 제출기한 이후에 사업계획서 수정·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절대 불가 / 발표자료는 심층인터뷰 대상자 별도 제출 안내 예정.

5

심사 및 선정

□ 심사 절차: 총 3단계 심사(서면→심층인터뷰→대면)를 통해 최종 선정

①요건검토	②서면심사	③심층인터뷰	④대면심사	⑤최종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면심사 대상자 확인	▶ 사업계획서 심사 1.5배수 선정	▶ 대표자의 창업 의지,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 파악 대면심사 점수 20% 반영	▶ 사업계획서 기반 PT 발표 및 질의응답	▶ 사업비 및 운영기관 배정 등 확정 및 최종 공고

※ 요건검토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 사업참여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하지

□ 심사방법

- ① (요건검토) 제출된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(서면심사) 사업계획서를 평가(가점 포함) 하여 선정 규모의 1.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,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선정

< 서면심사 가점 내역> ※최대 9점 인정

구분	대상자	점수	비고(제출서류 등)
추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 내 시·군 추천서를 득한 자 	2점	[서식 3] 추천서 시·군 날인 필수 제출
교육 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기업(팀) 대표자가 2023년~2026년 도내 시·군 사회적경제교육과정(창업아카데미) 12시간 이상 수료자 	6점	시·군 발급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 ※ 별첨 4. 확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기업(팀) 대표자가 2023년~2026년 도내 시·군 사회적경제교육과정(창업아카데미)를 수료하였으나 교육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부족한 시간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온라인교육(GSIC클래스)으로 추가교육시간 인정 	3점	① [서식 3] 시·군 발급 교육수료증 ② GSIC클래스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※ ①, ② 모두 제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3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비기너캠프 참가자 2023년~2024년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수료팀 2025년 청년 새로운 창업동아리 수료팀 		관련증빙서류 제출
SV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3년~2025년 사회가치측정결과 탁월 	1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3년~2025년 사회가치측정결과 우수 가점 	0.5점	

*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불인정

- ③ (심층인터뷰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 사전 심층인터뷰를 통해 대표자의 창업의지,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 및 대면 심사 점수에 반영(20%)

④ (대면심사) 소셜미션, 창업아이템 경쟁력,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(발표 5분, 질의응답 7분 예정)

* 대면심사 시,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
< 대면심사 가점 내역 >

구분	대상자	점수
가점 (최대 1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소재 기업(자) (고양시, 남양주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양주시, 구리시, 포천시, 동두천시, 가평군, 연천군) 	1점

⑤ (최종선정) 대면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기관·사업비 배정 완료 후 최종 선정 공고 *사업비: 대면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□ 심사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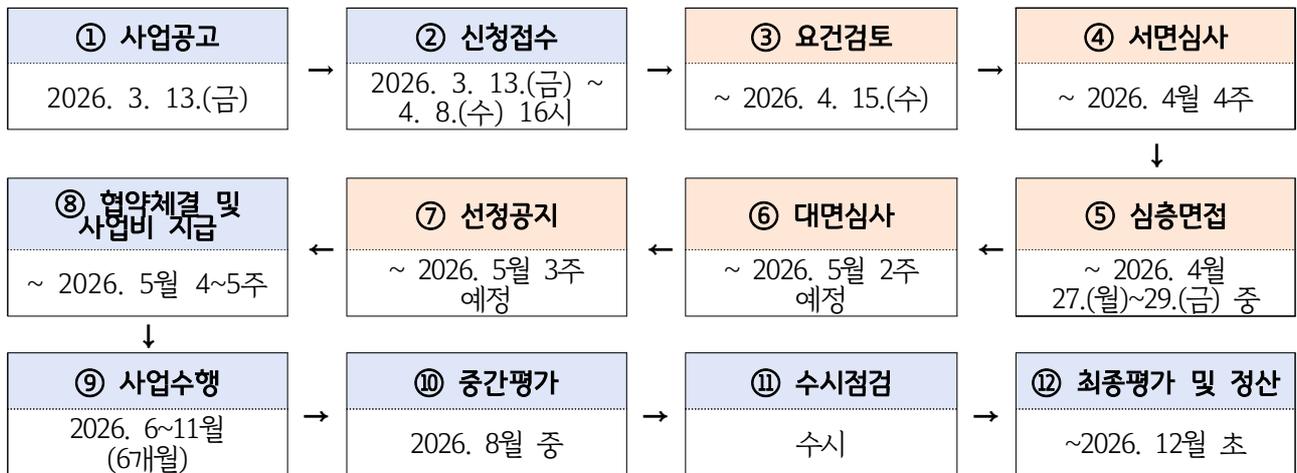
○ 요건검토 내용

구분	내용	검토결과
요건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고문 내 기재된 신청자격 부합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자가진단표 제출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수 제출서류 3개 이상 미제출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○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항목

구분	내용	배점
사회문제정의 및 핵심고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구체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여 가능성 핵심고객 정의의 구체성 및 고객 확보 전략 	20
시장규모 및 경쟁자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규모의 타당성 및 도입과정에서의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현재 시장 내 경쟁사는 누구인가? 경쟁자 대비 차별성 및 경쟁우위 확보 여부 	15
창업아이템 (해결방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해결방안의 차별성 및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가능성 	15
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운영 가능성 사업 실행을 위한 역량(인력, 네트워크, 경험, 자원 등) 보유 여부 지원 후에도 추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? 	20
핵심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즈니스모델 실현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 및 사업의 도입·확산 가능성 	10
마일스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약기간 내 사업진행 및 성공을 위한 계획 적정성 등 	10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획대로 사업 추진 시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? 해결책이 창출할 긍정적인 사회적·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? 	5
사업비 사용계획 (예산 타당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산 설계의 타당성과 항목의 적절성 시장가격 대비 예산의 적정성 	5
합 계		100

□ 전체 운영일정 *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6 유의사항

1 신청자격 유의사항

- 사업자 2개 이상 보유 시,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,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

※ (참고) 가능 기준

-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하는 경우 (단, 창업기업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함)
- 비영리단체(법인 포함)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
-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 영위

-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,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2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누리집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인증(예비창업자: 휴대폰 본인인증, 창업기업: 사업자번호 인증)이 가능한 본인(또는 신청기업)이 신청하여야 함

3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-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

하는 경우,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-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
④ 심사 중 유의사항

- 전 심사과정에서 (예비)대표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야 함

⑤ 선정 후 유의사항

- 최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협약기간 중 확인된 경우,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사업부진, 사회적물의 발생,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사유발생 시,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협약 해지,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우리은행 보조금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해야 함

⑥ 선정자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 운영 및 회계 관리지침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(3년간 사후성과 등), 평가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멘토링-특화 및 역량

강화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
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등 정당한 사유(경영부진(동분기 매출 60% 이상 감소, 사업자 양도, 인수합병 등)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**3년간 경기도 내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**

※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※ 이외 내용은 추후 배포될 「2026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 관리지침(운영 및 회계)」을 적용함

7

문의처

- (총괄기관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지원팀
- (전화번호) 031-258-3252, 3258, 3260
- (E-mail) gsic_impact@gsic.or.kr ※ 가급적 메일 문의 요망

붙임

창업기업 최종평가지표(안)

* 최종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

구분		최종평가 지표		
예비 창업자	완료	최우수	① 법인설립 and	
			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	
	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			
	④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	
	우수	① 법인설립 and		
		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		
		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		
	양호	① 법인설립 and		
		② 시제품 구현 완료		
	실패	① 법인 미설립 or		
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				
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				
④ 필수 교육·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		
성실실패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		
성장 트랙	완료	사회적 경제 조직	① 법인유지 and	
			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 and	
			③ 지원사업비 20% 이상의 매출 또는 신규 고용창출 and	
			④ 지원사업비 이상의 투자유치	
		우수	① 법인유지 and	
			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 and	
			③ 매출 또는 고용유지	
		양호	① 법인유지 and	
			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	
		사회적 경제 조직 진입 희망	최우수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설립(개인사업자 폐업필요) (법인사업자) 법인유지 and
				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
				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
	④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완료			
	우수	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설립(개인사업자 폐업필요) (법인사업자) 법인유지 and	
			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	
	양호	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		
		④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
	실패	① 법인 미설립 or		
		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		
		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		
④ 필수 교육·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		
성실실패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		

※ 유의사항 ※

- 법인설립(유지) 기준은 경기도 내 법인설립(유지)임
- 모든 평가지표 내 성과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건만 인정함
- 실패 또는 성실실패의 경우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전액환수,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